

 신안산대학교	<b>외국인의 입학에 관한 규정</b>	규정번호 3-1-19 제정일자 2021. 8. 20. 개정일자 2024.4.15. 책임부서/팀·계 국제교류협력원
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“학칙” 및 “학칙시행세칙”에 의하여 정원 외로 모집하는 외국인의 입학(편입학 포함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적용 대상)** 이 규정에서 “외국인”이라 함은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
2.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

**제3조 (지원 자격)** ① 우리 대학의 전문학사·학사과정(이하 “전문학사과정 등”이라 한다.)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어야 한다.

1. 삭제<2024.4.15.>
2. 삭제<2022.3.31.>
3. 본교 한국어학당 이수자(온라인 정규과정 포함) 중 본교 자체 한국어능력평가 60점 /100점 이상 취득자. <2022.3.31. 개정>
4.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자 또는, 사전평가 61점 이상 득점자 <2022.3.31., 제정 2023.12.7. 개정>
5.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 중급1 이수자<2023.12.7. 제정>

6.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2급 소지자는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 연수를 필수로 이수해야한다. 단,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2급을 소지한 입학생이 입학 후 첫 학기 중 3급을 취득할 경우 연수 시간은 120시간으로도 충족된다.<2023.12.7. 제정>

**제3조의2(영어능력기준)** ①영어사용과정(영어트랙)에 입학하려는 유학생의 입학을 위한 영어 능력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. <신설 2024.4.15.>

1. 영어능력시험 TOEFL 530(CBT 197, IBT 71), IELTS 5.5, CEFR B2, TEPS 600점(NEW TEPS 326점) 이상 취득자<신설 2024.4.15.>
  2. 전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민간영어능력시험 취득자<신설 2024.4.15.>
  3. 본교 영어 구술면접 70점 이상자<신설 2024.4.15.>
-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영어사용과정(영어트랙) 지원자 중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빙 서류로 영어능력 기준 합격을 인정한다.<신설 2024.4.15.>

**제4조 (모집학과 및 모집인원)** ① 전문학사과정 등의 모집학과는 우리 대학에 설치된 모

는 학과로 하며, 모집은 모집요강 입학전형에 의하여 모집한다. <2022.3.31. 개정>

② 순수외국인 정원외 모집인원 제한이 없다. 다만, 국가자격증 취득 관련 학과는 별도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다. <2022.3.31. 개정>

**제5조 (모집 시기)** 전문학사과정 등의 모집 시기는 매 학기 수업 개시 전에 실시한다.

**제6조 (제출서류)** 전문학사과정 등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[별표 1]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7조 (전형방법)** 입학전형은 서류전형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 및 구술시험,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8조 (입학사정)** 전문학사과정 등의 외국인의 입학사정은 외국인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허가하며 제반업무는 국제교류협력원에서 관장한다.

**제9조(자체 한국어 능력평가 출제 및 채점 비용 지급)** 자체 한국어능력시험을 출제하여 입학 지원자의 어학 능력을 평가 할 수 있다. 문제 출제 및 채점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2023. 2. 23. 신설>

#### **제10조(유치홍보비 지급)**

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등록자 유치홍보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2023. 2. 23. 신설>

② 기타 세부사항은 대학 및 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다. <2023. 2. 23. 신설>

**제11조 (등록금)** 외국인 합격자는 대학이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학 및 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또는 대학의 장학규정에 따라 등록금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 <2023. 2. 23. 신설>

**제12조 (기타)**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의 제 규정에 따른다. <2023. 2. 23. 개정>

#### 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의 제3조(지원 자격)은 202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전문학사·학사과정 외국인 입학지원자의 제출서류

연번	제출서류	부수	비고
1	입학지원서류 (소정양식)	1	여권사진 부착(또는 1개월 이내 사진)
2	최종 학력 졸업(예정)증명서	1	
3	최종 학력 성적증명서	1	
4	표준입학허가서 발급신청서	1	
5	재정보증서류	각 1	은행잔고증명서, 재정보증인의 재직 및 수입증명서 등
6	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	1	
7	한국어/영어 능력 입증 서류	1	TOPIK 성적 증명서 또는 영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
8	기타 입학전형에 필요한 서류	각 1	여권사본, 가족관계증명서류, 신분증 등